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2

발의연월일: 2020. 7. 16.

발 의 자:김경만·박홍근·서영석

신정훈 · 이상직 · 허 영

김회재 · 김홍걸 · 조오섭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 지원 및 창업자·벤처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도 저하되고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 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 제4호 · 제5호 ·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3천만원 이하분"을 "5천만원 이하분"으로, "3천만원 초 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 감면) ① -----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 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 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 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 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과세) ①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 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 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 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 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 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 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 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
1
<u>2023년</u>
<u>2023년</u> 12월 31일
<u>2023년</u> 1 <u>2월 31일</u> 2
<u>2023년</u> 12월 31일

출자지분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한다)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취득한 주식 또는출자지분가.~마.(생략)
-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 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 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		
-		
-		
-		
-		
-		
-		
-		
-		
-		
-		<u>2023년</u>
1	12월 31일	
<u>]</u> -	<u>12월 31일</u> 	
_		
_		
_	가. ~ 마. (현행과 집	
_	가. ~ 마. (현행과 집	
_	가. ~ 마. (현행과 집	
_	가. ~ 마. (현행과 집	
_	가. ~ 마. (현행과 집	
_	가. ~ 마. (현행과 집	
_	가. ~ 마. (현행과 집	
4.	가. ~ 마. (현행과 집	 남음)

-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 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②・③ (생 략)
-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 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 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 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

5
202
3년 12월 31일
6
2023년 12월 31일
②・③ (현행과 같음)
4

스상장기업으로부터 <u>2020년 12</u> <u>월 31일</u>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략)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u>2020년 12월 31일</u>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전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u>2023년</u>	<u>12</u>
	월 31일		
	<u>.</u>		
	⑤ (현행과 같음)		
세]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
	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	과
	같음)		
	7		
	<u>2023년 12월 31일</u>	<u> </u>	
	8		
	<u>2023년 12월 31</u> 억	<u>일</u>	
세]15조(벤처기업 출자자	가의 제2	2차
	납세의무 면제) ① -		
		2023년	<u>12</u>
	월 31일		

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 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 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 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 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 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하다.

1. • 2. (생략)

② ~ ④ (생 략)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

,
<u>2023년 12월 31일</u>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u>2023년 12월 31일</u>

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 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 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 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 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 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 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 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 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 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 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 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 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u>5천만원 이하분</u>
<u>5천만원 초과분은</u>
100분의 50)

러하지 아니하다.

- 1. ~ 6. (생 략)
- ② ~ ④ (생 략)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 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 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 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 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 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 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 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 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 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u>3천만원</u>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 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 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 한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에 산 업재산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 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 한다)하고 해당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현물출 자에 따른 이익을 거주자가 해 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세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세법」 제21조에도 불구 하고 해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5천만원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u> </u>

있다.

② ~ ⑥ (생 략)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 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 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중견 기업"이라 한다)이 산업수요맞 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20년 12월 31일까 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 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 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 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② (생략)

2	~ 6	(현행	과 같-	음)	
1292	돈의2(산업수	·요맞칌	충형고등	<u> </u>
교등	등 졸	업자를	병역	이 행	ğ
				한 세약	
	_				
		2023	녀 12·	월 31일	
		<u> 202</u> 0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 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1. ~ 3. (생 략)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 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 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29조의	의3(경	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자	1)
	<u>202</u>	3년 12	월 31일-	
1. ~	3. (현	현행과	같음)	
2 -				
				<u>2</u>
<u>023년</u>	12월	31일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독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가시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 ③ ~ ⑥ (생 략)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 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 금증가분의 100분의 5(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u>2023</u>
<u>2023</u> 년 12월 31일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 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 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 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④ (생략)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 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2023년 12월 31일
<u>.</u>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5
<u>2023년</u>

1. ~ 3. (생략)

⑥ ~ ⑧ (생 략)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이 간근로자"라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

<u></u>
<u>.</u>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
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ეიე
<u>202</u>

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 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 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③ (생략)

<u> 3년 12월 31일</u>
②・③ (현행과 같음)